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자격요건을 법으로 상향 등 >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36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을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2. 21.

다. 회 부 일 : 2025. 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장애학생 지원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학생지원센터 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288개 대학 중 25개 대학은 자격이 없는 센터장이 운영하고 있었고 61개 대학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모호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등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부실한 운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충분하지 못한 환경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요건을 상향하여 현행법에 규정하고 이 자격 요건을 위반하여 장애학생지

원센터의 장을 임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장애학생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제39조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요건을 상향하여 현행법에 규정하고 이 자격 요건을 위반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을 임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장애학생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제3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② (생략) ③ <u>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u>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u> 1. <u>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u> 2. <u>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u> 3. <u>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4.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u>

현행	개정안
④ (생략) <u><신설></u>	④ (현행과 같음) <u>제39조(과태료) ①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으로 임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u>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30조¹⁾는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제31조²⁾에 따른 편의제공 및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 1) **특수교육법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두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관한 사항 등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동조 제3항 및 제4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1조³⁾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개정안이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대학 중 법령 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센터장을 맡고 있거나, 전담인력이 부재하는 등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부실한 운영 사례가 파악되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개정안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법규성을 높이고, 이를 위반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의

-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 3)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장을 임명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 조항의 규범력을 높임으로써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장애학생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전국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현황 >

(단위: 개소, 2024년 11월 기준)

시행령 제1~제3호 자격 충족	시행령 제4호 요건 충족	요건 미충족
235	70	0
305		

자료: 교육부

다만, 「고등교육법」 제19조34)에 따라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

- 4)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학교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둘 것
 2.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출 것
- ③ 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 ④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

권센터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유사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개정안에서 과태료 규정 신설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면 대학의 다양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개 정 안	정 부 수 정 안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② (생략)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③ ----- ----- ----- -----.
1. ~ 3. (생략)	1. ~3, (개정안과 같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4. -----

다.

⑤ 제4항에 따른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직원, 2. 학생, 3.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⑥ ~ ⑦ (생략)

개 정 안	정 부 수 정 안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u>대통령령</u> <u>으로</u>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u>학칙</u> <u>으로</u> -----

덧붙여 과태료를 신설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유사 입법례에서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과 정보공시 및 지도·점검 등의 수단을 통해서도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과태료 규정에 대하여 일부 대학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장애대학생 관련 협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장애 학생 증가 추세에 따라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대학 및 관련 협회 의견 >

◦ (세종대) 신중검토

- 과태료 부과는 장애학생의 권익 보장을 위한 법령의 취지를 오히려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법률 개정의 취지처럼 센터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면 센터인력의 재교육을 적극 권장하거나 현행 대학정보공시 항목을 세분하여 공개하는 방안 검토가 더 긍정적일 것임

◦ (한국외국어대) 신중검토

- 센터장이 법률적 관점에서 정책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법학 학위 소지자 역시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 개정안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대덕대) 신중검토

-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대학의 재정여건과 현실에 맞는 법률 개정이 필요

※ 기타의견

◦ (전국대학교장애학생지원협의회)

- 현재 대학에 진학하는 장애학생의 증가 추세에 따라 전담직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함

문 의 처

02)6788-5193